

2026년 제1회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 희망자 모집 재공고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 희망자를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6년 06월 29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1. 모집인원 및 직급

직급	인원	근무예정기관(지역)	임용예정시기
환경직 (8급 또는 9급)	1명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소재)	'26. 8~9월 (변동가능)
시설직 (일반토목, 건축 /8급 또는 9급)	1명		

2. 응시 자격

- 강원특별자치도 내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직 중인 채용예정 직렬, 직류, 직급에 해당하는 전일제 일반직 지방공무원 (「공무원 임용령」 제16조제4항)
- 공무원 전보 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공무원임용령」 제45조2)
- 현 소속기관의 전출 동의가 가능한 자(전출동의 확인서(서식4) 제출 필수)
-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및 징계 의결 요구 중, 직위해제 중에 있지 아니한 자
- 비위 등과 관련하여 검찰 경찰 조사기관 등에서 수사 조사 진행 중에 있지 않은 자
- 남자의 경우 병역 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3.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 ① 소통·공감 ② 헌신·열정, ③ 창의·혁신 ④ 윤리·책임

【평정 요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 ① 소통·공감 :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 ② 헌신·열정 :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 ③ 창의·혁신 :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 ④ 윤리·책임 :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4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2항)
- (추가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및 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4. 전형 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26.6.29.(월) ~ '26.7.9.(목)	'26.7.7.(화) ~ '26.7.9.(목)	'26.7.20.(월)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26.7.29.(수)	'26.8.10.(월)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5. 제출서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 2026. 7. 7.(화) 09:00 ~ 7. 9.(목) 18:00
- 접수방법: 인사담당자 전자메일 접수(메일주소: dokojin@korea.kr)
 - ※ 이메일 제목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신청"
 - ※ 접수 마감시간 내(2026. 7. 9.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나. 제출서류

- 인사기록카드 사본 또는 인사요약카드(e-사람 출력물 등) 1부
 - ※ 인사발령, 자격 및 학력사항, 포상 및 징계사항 등이 상세히 포함된 자료
- 이력서 1부(서식1)
- 자기소개서 1부(서식2)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서식3)
- 전출 동의 확인서 1부(서식4)
- 전입 제한사항 부존재 확인서 1부(서식5)
 - ※ 제출서류와 서명 등 누락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PDF파일로 제출(파일명 : "소속기관_성명")

6.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제출 누락, 기재사항 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모자의 책임으로 함
-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또는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전입대상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서류 접수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할 수 있음
- 소속기관의 전출동의 가능여부 등을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사전 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
- 전입 후 3년이내 타 기관으로 전보가 제한됨

- 본 전입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공지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033-520-61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1】

이 력 서

사 진	성 명	생년월일(만 00세)	
(이미지 파일)		(만 00세)	
	소 속	부 서	임용구분
			○급 공채
	현직급	현직급임용일	최초임용일

연락처	사무실 / 휴대폰	e-메일	인사부서 담당자 / 연락처
		0000@korea.kr	

학 력	기 간	학 교 명	전 공	학 위
	'00.00.00.~'00.00.00.	고등학교부터 기재		

주 요 경 력	기 간	직 급	부서 및 직위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술)
	최근부터 기재	시설0급	

자 격 사 항	자격·면허증	취득일	시행기관
	TOEIC 750점	2018.00.00.	
	워드프로세서 1급	2018.00.00.	
	...		

포 상	일 자	상훈명	징 계	일 자	내 용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본인은 2026년 제1차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지원서를 제출함에 있어 인사담당기관이 본인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제반사항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같은법 제23조 단서 및 제15조에 따라 인사담당기관이 수집 및 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인사검증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 및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6년 월 일

□ 지원자 본인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명 (서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년월일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택전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휴대전화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e-mai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속기관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장전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락가능 팩스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인사검증을 위해 수집 및 이용되는 정보자료의 범위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일반직 채용(전입) 심사
-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채용심사에 필요한 개인 인적 제반사항
 - 성명, 생년월일, 공직근무경력 제반사항, 포상·징계, 가족사항, 학력사항 등 채용심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
-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 지원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응시원서 접수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전출 동의 확인서

○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 생년월일 :

위 공무원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으로의 전입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2026. ○. ○.자로 전출 동의가 가능함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확인자 : 인사부서장) 소 속 :

직위(직급) :

성 명 : (서명)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전입 제한사항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2026년 제1차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에 지원함에 있어 아래의 ‘응시제한 사항’을 모두 확인하였고, 징계처분 등 이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허위로 확인될 경우 전입 취소 등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응시제한 사항

-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고 말소기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사면되지 않은 자
-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직위해제 중인 자
-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에 의한 기관 간 전보제한 대상자

제45조의2(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소속 공무원을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이하 이 조에서 “전출”이라 한다)하거나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의 공무원을 임용제청 또는 전입시키려고 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 1. 7.>

1. 법 제3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소속 장관이 다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임용제청하는 경우
2. 제4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 제32조의2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전입 또는 전출하는 경우
- ②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1조에 따라 실시한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 임용일부터 3년의 전출제한기간(시보임용 기간, 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나야 전출될 수 있다.

<개정 2022. 12. 27., 2026. 4. 7.>

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공무원을 전출하는 경우
2. 신설·통합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인력관리상 필요에 따라 전출하는 경우
3.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해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과 교류하는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경우
- ③ 법 제28조제2항제2호, 제3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 임용일부터 5년(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채용된 공무원은 3년)의 전출제한기간이 지나야 전출될 수 있다. <개정 2026. 4. 7.>
- ④ 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역 또는 해당 기관에 임용된 날부터 5년의 전출 제한기간이 지나야 전출될 수 있다. <개정 2026. 4. 7.>
- ⑤ 임용권자는 일반승진시험 요구 중에 있는 소속 공무원을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가 다른 기관에 전출할 수 없다.

2026. . .

확인자 : _____ (서명)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